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(안)

검 토 보 고

1996. 1. 22.

교육사회위원회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6년 1월 12일

○ 회부일자 : 1996년 1월 12일

3. 제 안 이 유

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 제14,825호 '95. 12. 14)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과의 복무에 형평을 기하고자 함

4. 주 요 골 자

-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
-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
-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
- 20년 이상 근속공무원에게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

5. 검토 보고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,

본 조례안은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를

공무원 복무규정(대통령령 제 14,825호, '95. 12. 14)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국가
공무원 복무규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

타당하다고 사료됨

6. 개정 조례안 : 별 첨